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55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박홍배·박정현·민병덕
이재정·서영교·박희승
황명선·문대림·박 정
김우영·윤준병·전용기
윤후덕·염태영·한준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진동 유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발생 지역과 소음·진동 발생 지역이 다른 경우, 피해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소음·진동 유발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대규모 공사장, 산업시설 등으로 인한 생활소음·진동 피해가 광역적·초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관할권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에 머물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지자체 간 협력 부재로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발생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행정 절차

의 지연 등으로 저감조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보호라는 법령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제2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해 관할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가 속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해 관할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가 속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 ⑥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신설></u>	